

지급명세서 제출안내
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

1, 4, 7, 10월 말일까지 제출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
1, 7월 말일까지 제출



국세청

National Tax Service

일용근로지급명세서

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.

- ▶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비용(인건비) 지출 증빙 및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.

→ 제출기한

- ▶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

● 1 ~ 3월 지급분 ⇨ 4월 30일까지

● 4 ~ 6월 지급분 ⇨ 7월 31일까지

● 7 ~ 9월 지급분 ⇨ 10월 31일까지

● 10 ~ 12월 지급분 ⇨ 다음해 1월 31일까지

- ▶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 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→ 가산세(법인세법§75의7①, 소득세법 §81의11①)

- ▶ 미제출·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1%



→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.

▶ 일용근로자

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(일당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등)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(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)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.

- 고용기간이 3월(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)이상인 경우 상용 근로자에 해당

▶ 상용근로자

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.

-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

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(소득세) 계산방법

$$\text{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(소득세)} = \frac{[(\text{일 급여액} - 150,000\text{원}) \times 6\%]}{\text{산출세액}} - \frac{(\text{산출세액} \times 55\%)}{\text{세액공제}}$$

계산사례

일용근로자를 7일동안 고용하고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

- 비과세소득 :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
 - 산출세액 : $(200,000\text{원} - 150,000\text{원}) \times 6\% = 3,000\text{원}$
 - 소 득 세 : $\frac{3,000\text{원} - 3,000\text{원} \times 55\%}{\text{산출세액} \quad \text{세액공제}} = 1,350\text{원}$

→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 9,450원(1,350원 × 7일)입니다.

※ 참고

간편법 : $(200,000\text{원} - 150,000\text{원}) \times \frac{2.7\%}{6\% \times (1 - 55\%)} = 1,350\text{원}$

→ 1,350원 × 7일 = 9,450원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
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제외)·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**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**가 있습니다. (소득세법 §164의3)

▶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.

➔ 제출기한

▶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

● 1월 ~ 6월 지급분 ⇨ 7월 31일까지

● 7월 ~ 12월 지급분 ⇨ 다음해 1월 31일까지

* 휴업·폐업·해산한 경우 :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

➔ 제출내용

▶ 소득자의 인적사항, 근무기간, 지급금액 등

➔ 가산세 (법인세법 §75의7①, 소득세법 §81의11①)

▶ 미제출·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.5%

➔ 제출방법

▶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한 제출

*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·홈택스 참고

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&A

Q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?

A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.

Q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?

A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.

Q 3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?

A 아니요. 휴업,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제출 방법



홈택스로 제출하기

1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

2 회원 로그인

- ▶ 공인인증서 로그인
- ▶ 아이디 로그인 (ID, 비밀번호)

3 **일용** 신청/제출 ▶ 과세자료제출 ▶ **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**

간이 신청/제출 ▶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
▶ 자료 작성 및 제출

- 제출기한이 있는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(정상)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 제출방식 선택

▶ 지급명세서의 제출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직접작성 제출방식

1. 자료 작성 ▶ 2. 오류검증 ▶ 3. 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

변환 제출방식 (회계프로그램이용 등)

1. 회계프로그램 변환 과세자료 작성 ▶ 2. 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▶ 3. 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



기타 방법으로 제출하기

1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

▶ 지급명세서 서식은

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▶ 국세정보 ▶ 세무서식

▶ 소득세법(제24호(4)) ▶ **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**

▶ 소득세법(제24호의4(1,2,4)) ▶ **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**

* 제24호의4 (3)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(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) 삭제
-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제24호4(2)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작성

2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

일용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즉시 제출(전송)할 때만 사용합니다.

- 제출대상 : 일당 187,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

간이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.

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

- ① '신용카드'와 '현금(영수증)' 중 '현금(영수증)' 선택
- ② '현금(영수증) key' 메뉴 중 '(사업자)지출증빙' 선택
※ '원천징수' 메뉴가 있는 경우, '원천징수' 선택
- ③ 소득자구분 선택 (10(일용근로소득) 혹은 40(반기상용근로자))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
- ④ 지급액입력(key-in : 수동입력)
- ⑤ 승인요청(국세청에 자동전송)
※ 지급명세서 전송이 안 될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송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
일용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- 다만,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통보됩니다.

'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

일용근로지급명세서

● 제출기한 연장 (소득세법 §164①)

종 전

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
(1·4·7·10월) 10일



변경

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
(1·4·7·10월) 말일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
종 전

- ▶ **제출기한 연장**
(소득세법 §164의3①)
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
(1·7월) 10일



변경

분기 마지막 달의
다음달(1·7월) 말일

- ▶ **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**
(소득세법 시행규칙 §100)
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

반기동안 지급한 소득

● 휴·폐업등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부담완화

종 전

- ▶ **제출기한 조정**
(소득세법 §164의3①)
휴업·폐업·해산일이
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



변경

휴업·폐업·해산일이
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
다음달(1·7월) 말일

- ▶ **제출의무 면제**
(소득세법 시행령 §213②)

〈신설〉

휴업·폐업·해산으로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
제출기한 이내에
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